

업무지침

2025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2025. 1.



보건복지부

목 차

I . 자격신고	1
1. 개 요	1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3
3.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5
4. 자격신고 업무 관련 행정사항	5
II . 보수교육	6
1. 개 요	6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7
3.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19
4. 행정처분	21
5.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22
III. 참고서식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응급구조사 관련 주요 개정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 2024. 10. 4.,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진료를 위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기준과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응급구조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확대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방법 신설 등
(안 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1)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함.
- 2)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 3)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소방청장은 소속 119 구급대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각각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나.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3 제5항, 안 제18조의3제6항 신설)

- 1)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함.
- 2) 재해 등으로 여러 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중증도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등(안 제35조)

- 1) 응급구조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시간을 종전의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소방청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으면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라.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안 별표 14 제1호마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 1) 응급구조사는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상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지만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음.
- 2)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및 전송 등 5종의 업무를 추가하여 시의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

원인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제18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3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4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를 “종사하지 않다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을 “종사하지 않은 사람: 12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을 “종사하지 않은 사람: 16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을 “종사하지 않은 사람: 20시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소방청

2. 중앙응급의료센터

제35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35조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35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다)의 인력기준란 중 “전원관리”를 “전원관리, 응급처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14 제1호마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중전의 마목)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마.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아.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자. 응급 분만 시 태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별지 제14호서식 신청사유의 면제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면제사유

[] 군 복무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신청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상세 사유: _____)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앞쪽)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요청자(기관)*	연락처
출동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이송의 종류*	① 현장 이송 ② 의료기관간 이송 ③ 미이송(사유:) ⑨ 기타()
현장도착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주소*	
이송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명칭*	
이송종료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도착기관 명칭*	이송거리 km
환자인계 의사*	면허번호	성명	(서명)	환자인수 의사*	면허번호	성명	(서명)
이송지도 의사*	소속	성명		의사통신방법*	① 전화번호() ⑨ 기타()		
의료기관 선정자*	① 환자/보호자 ② 의사 ③ 구급대(이송자) ⑨ 기타()	선정 이유*	① 치료받던 병원 ② 전문진료 가능 ③ 근거리 ④ 환자/보호자원함 ⑨ 기타:()	선정 방법*	① 직접 연락 ② 구급상황관리센터 ③ 중앙응급의료센터 ④ 자체 판단 ⑨ 기타 ()		

2. 인적 사항

환자	성명* ([] 확인불가)	성별	①남 ②여 ([] 확인불가)	생년월일	년	월	일	[] 확인불가
	연락처		([] 확인불가)	주소*				([] 확인불가)
보호자	① 있음 ② 없음	성명		연락처		관계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친척 ⑤ 친지 ⑨ 기타()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분류결과*	① 소생 ② 긴급 ③ 응급 ④ 준응급 ⑤ 비응급	질병여부*	① 질병 ② 질병외	의식수준*	① A ② V ③ P ④ U
의심질환명*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 분	호흡수 / 분	체온 ℃	산소포화도 %
환자증상 (중복가능)	① 전신 ① 고열 ② 오한 ③ 마비 ④ 청색증 ⑤ 아나필락시스 ⑨ 기타 ② 신경계 ① 의식소실 ② 경련/발작 ③ 두통 ④ 감각이상 ⑤ 어지러움 ⑨ 기타 ③ 안면 ① 안면통증 ② 이명 ③ 목통증 ④ 코피 ⑤ 이물감() ⑨ 기타 ④ 호흡기계 ① 호흡곤란 ② 호흡정지 ③ 객혈 ④ 기침 ⑤ 알레르기반응 ⑨ 기타 ⑤ 심혈관계 ① 심정지 ② 가슴불편감(흉통포함) ③ 두근거림 ④ 실신 ⑨ 기타 ⑥ 소화기계 ① 복통 ② 오심 ③ 구토 ④ 혈변 ⑤ 설사 ⑥ 변비 ⑨ 기타 ⑦ 외상 ① 골절() ② 탈구() ③ 뺨() ④ 열상() ⑤ 찰과상() ⑥ 타박상() ⑦ 절단() ⑧ 압박손상() ⑨ 화상() ⑩ 기타 ⑧ 기타 ① 응급분만 ② 기타				
과거력	① 없음 ② 뇌혈관질환 ③ 고혈압 ④ 당뇨 ⑤ 결핵 ⑥ 간염 ⑦ 심장질환 ⑧ 암 ⑨ 기타:				
출발시 처치상태*	①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②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③ 순환: ① 없음 ② 심폐소생술 ③ 모니터링([] 혈압 [] 맥박 [] 산소포화도 [] 3유도심전도) ④ 12유도심전도 측정 ⑤ 정맥로확보 ⑥ 정맥혈채혈 ④ 약물: ① 없음 ② 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③ 정맥로2: / ④ 정맥로3: / ⑤ 경구투여: ⑤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 하지 ⑨ 기타: ⑥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鼻胃管, L-tube)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분류결과*	① 소생 ② 긴급 ③ 응급 ④ 준응급 ⑤ 비응급	의식수준*	① A ② V ③ P ④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 분	호흡수 / 분	체온 ℃	산소포화도 %
이송/도착시 처치상태*	①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②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③ 순환: ① 없음 ② 심폐소생술 ③ 모니터링([] 혈압 [] 맥박 [] 산소포화도 [] 3유도심전도) ④ 12유도심전도 측정 ⑤ 정맥로확보 ⑥ 정맥혈채혈 ④ 약물: ① 없음 ② 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③ 정맥로2: / ④ 정맥로3: / ⑤ 경구투여: ⑤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 하지 ⑨ 기타: ⑥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탯줄결찰 ⑤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명*	종별(차량, 자격, 면허)*	번호(등록, 자격, 면허)*	성명*
이송차량*		① 특수구급차 ② 일반구급차 ⑨기 타()		
운전자*				(서명)
동승자*		① 1급 응급구조사 ② 2급 응급구조사 ③ 간호사 ④ 의사 ⑧ 없음 ⑨기 타()		(서명)

비고 1.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으로 환자인계·인수의사, 운전자 및 구급대의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 표시는 반드시 적습니다.

작성방법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 ① 요청 연월일은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 ② 요청자(기관)는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③ 출동 연월일은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 ④ 이송의 종류는 현장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미이송,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119구급대 인계 등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 ⑤ 현장도착 연월일은 출동 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 ⑥ 출발지의 주소 및 명칭은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 및 의료기관명을 적습니다. 다만,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건물명 등을 적습니다.
- ⑦ 이송개시 연월일은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구급차가 출발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 ⑧ 이송종료 연월일은 기관(시설)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 ⑨ 도착기관 명칭은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⑩ 이송거리는 구급차에 이송 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 기관(시설)까지의 거리를 Km 단위로 적습니다.
- ⑪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수의사는 환자를 인계 및 인수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각각 적어야 하며, 이때 서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환자 인계·인수의사가 없을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⑫ 이송지도의사의 소속은 이송지도를 한 의사가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장소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통신 방법은 전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전화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⑬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선정자 및 선정이유, 선정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 ⑭ 의료기관 선정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의 전원지원을 통해 결정된 경우 ‘[3]중앙응급의료센터’로 기재합니다.

2. 인적 사항

- ① 환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표기합니다.
- ② 보호자 인적사항은 성명, 연락처를 적으며, 환자와의 관계를 표기합니다.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 ① 분류결과는 환자의 중증도·긴급도를 나타내며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 ② 질병여부는 질병에 의한 경우와 질병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질병외에 해당됩니다.
- ③ 의심 질환명은 이송 당시의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을 적습니다.
- ④ 의식수준은 A(명료), V(목소리에 반응), P(통증자극에 반응), U(반응없음)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 ⑤ 생체징후는 환자의 혈압(수축기, 이완기), 맥박수(분당), 호흡수(분당), 체온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적습니다.
- ⑥ 환자 증상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표기 하며, 중복작성 가능합니다. 외상의 경우, ()안에 손상부위를 적습니다.
- ⑦ 과거력은 환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의 종류나 상해 등을 적습니다.
- ⑧ 출발시 처치상태는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표기합니다.
- [3] 순환의 ③ 모니터링은 해당하는 항목에 ‘√’ 표기하며, 정맥혈 채혈은 정맥로 확보를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⑨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 ① 분류결과, 의식수준, 생체 징후는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의 ①, ④, ⑤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②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은 이송중의 환자 상태변화와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표기합니다.
- ③ 응급분만 시 탯줄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합니다.

5. 이송차량 및 이송차 등에 관한 사항

- ① 이송차량은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② 이송차 운전자의 소속기관, 성명을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③ 이송차 동승자의 소속기관, 성명, 자격·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신 설>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 3. (생략)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8시간 ---.

--- 종사하지 않다가 -----

-.

가. -----
종사하지 않은 사람: 12시간 ---

나. -----
종사하지 않은 사람: 16시간 ---

다. ----- 종사하지
않은 사람: 20시간 -----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2. (생략)

<신 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 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소방청

2. 중앙응급의료센터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⑨ 제8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 ⑪ (생략)

⑤ 제3항 또는 제4항-----

-----.

⑥ -----

제5항-----

-----.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⑩ 제9항-----

-----.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기존	변경(개정 2024. 10. 4., 시행 2025. 1. 1.)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u>마.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u> <u>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u> <u>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u> <u>아.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u> <u>자. 응급 분만 시 태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u> 차. 제2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변경 사항 없음

2025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변경 사항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3p	<신설>	(3) 자격 신고를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자 : <u>자격 효력 회복을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신고는 효력 회복을 위해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u> ※ (예)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 효력 회복을 위해 '25년도에 신고하였다면 다음 신고 연도는 2028년이고 추후 신고 연도는 2031년, 2034년, ..., 2025+3(n-1)년임	○ 내용 명확화
4p	【신고요건】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연간 4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신고요건】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2025년부터 적용, 2025년 이전은 연간 4시간 이상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5p	<신설>	나. 행정처분 후 효력 회복: 신고 “즉시” - 행정처분 후 효력 회복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요건 충족 필요(행정처분에 의하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 행정처분 후 효력 회복을 위한 신고요건 명확화
8p	나. 보수교육 면제 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u>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u> < 개정 2024. 10. 4., 시행일 2025. 1. 1.> ④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4., 시행일 2025. 1. 1.> 1. <u>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u>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7p	보수교육 이수 ▪ 매년 4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오프라인/인정과정/대체과정 이수) 이수 업무 복귀 시 ▪ 현업 복귀자 교육 :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복귀자. 가. 1년 이상 2년 미만 :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 10시간 이상 〈2018.1.1. 시행, 2019년도 보수교육부터 적용〉 면제 ▪ 군 복무중인 사람 (군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당해연도 자격 취득자(발급일자 기준) 유예 ▪ 본인의 질병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2018.1.1. 시행, 2019년도 보수교육부터 적용〉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외 종사자 미취업자	해당 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이수 ▪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오프라인/인정과정/대체과정 이수) 이수 (업무 복귀 시) ▪ 현업 복귀자 교육 :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복귀자. 가. 1년 이상 2년 미만 :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 20시간 이상 면제 1. 군 복무중인 사람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발급일자 기준)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유예 ▪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해당 업무 미종사자 보수교육 비대상 ▪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일도 종사하지 않은 경우(미취업자 포함)	○ 관련 내용 명확화
9~11p		<본문 참고>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4p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4시간 이상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2) 미취업자 및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0시간 이상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2) 미취업자 및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15p	<신설>	【현업복귀자 교육의 교육시간 적용례】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 :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시간 +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시간의 절반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25년) 2024년에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5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0시간 이상(2025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2시간(2024년 보수교육 4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6년 이후)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25년) 2023년과 2024년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5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2025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4시간(지난 2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8시간(2023년 4시간+2024년 4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6년) 2024년과 2025년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6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4시간 이상(2026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6시간(지난 2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12시간(2024년 4시간+2025년 8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7년 이후)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25년) 3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5년도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4시간 이상(2025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6시간(지난 3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12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6년) 3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6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6시간 이상(2026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8시간(지난 3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16시간(2023년 4시간+2024년 4시간+2025년 8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7년) 3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7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8시간 이상(2027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10시간(지난 3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20시간(2024년 4시간+2025년 8시간+2026년 8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8년 이후) 20시간 이상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시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6p	(3) 보수교육 유예자 보충교육(미취업자 및 해당 업무 미종사자 제외)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이수 시간은 유예되었던 연도의 보충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예1) '23년 유예자(미취업자 및 해당업무 미종사자 제외), '24년도에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8시간 이상 ('23년 보충교육 4시간(협회 온라인과정) + '24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예2) '22년 유예자(미취업자 및 해당업무 미종사자 제외), '23년 유예자(미취업자 및 해당업무 미종사자 제외), '24년도에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0시간 이상 (현업복귀자교육 2시간(협회 온라인과정) + '23년 당해연도 보충교육 4시간 + '24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4시간)	(3) 보수교육 유예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교육 이수 시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④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2. 1., 2024. 10. 4.>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보수교육 유예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보수교육 시간】 ▶ 보수교육 유예사유가 해소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시간 + 보수교육이 유예된 기간(3년 이상 유예대상이었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에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시간의 절반 (예시 1) 2024년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5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0시간 이상(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4시간)의 절반 2시간) (예시 2) 2023년, 2024년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5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8시간)의 절반 4시간) (예시 3) 3년 이상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5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4시간 이상(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최근 3년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12시간)의 절반 6시간) (예시 4) 2025년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6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2026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8시간)의 절반 4시간) (예시 5)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6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4시간 이상(2026년 보수교육 8시간 +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12시간)의 절반 6시간) (4) 보수교육 미 이수자 보충교육 ○ 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이수기간에 따른 보충교육을 받아야 함	○ 관련 내용 명확화

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7p	<신설>	(5) 보수교육 이수 시간 인정 및 평점제 운영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4.> - 소방청 -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두 가지 경우는 보수교육으로 최대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으로 정한 교육 -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소속 지회, 관련 직역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관련 분야별 교육기관 및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 중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보수교육에 상응한다고 인정받은 교육 ※ 회원·비회원간의 차등을 두지 않고,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함으로써 보수교육을 듣고자 하는 응급구조사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수교육 이수 시간 1시간을 1평점으로 하여 평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타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평점을 부여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평점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점이 이월되지 않는 만큼, 교육과목 선택에 따라 평점의 총합이 8평점이 될 수 있도록 과정 편성 필요 - 평점제와 관련된 세부 운영기준을 사무편람에 명시하여야 함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25p	<신설>	5.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대상 확인 신청서 6.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대상 확인서	○ 보수교육 행정 처리를 위한 서식 추가

· I 자격 신고

1. 개 요

가. 추진 배경

- 응급구조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나. 추진 경과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 및 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6. 5. 29. 공포, '17. 5. 30. 시행) 및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시행('17. 5. 30.)

다.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응급의료법”)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응급구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라. 자격신고 수리 업무 관련 위탁

(1)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가. 자격신고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해당 업무 미종사자’도 신고 대상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

(1) '17.5.29.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7. 5. 30.부터 '18. 5. 29.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예) '17. 5. 30.~'17. 12. 31.에 신고하였으면 '20. 1. 1.~'20. 12. 31.에 재신고(N년도에 신고하였다면 N+3년도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7.5.29.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7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6년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9년도에 최초로 신고하였다면,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실태 등 신고

(2) '17.5.30. 이후 신규 자격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그룹명	자격 발급 연도	1차(최초) 신고 연도	2차 신고 연도	3차 신고 연도	n차 신고 연도
3A	2017.5.30.~2017.12.31.	2020	2023	2026	2020+3(n-1)
3B	2018.1.1.~2018.12.31.	2021	2024	2027	2021+3(n-1)
3C	2019.1.1.~2019.12.31.	2022	2025	2028	2022+3(n-1)
}	}	}	}	}	}
산식	X	(X+3)	(X+6)	(X+9)	(X+3n)

* 자격을 '17년 6월 1일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 본인의 자격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3) 자격 신고를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자 : 자격 효력 회복을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신고는 효력 회복을 위해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예)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 효력 회복을 위해 '25년도에 신고하였다면, 다음 신고 연도는 2028년이고, 추후 신고 연도는 2031년, 2034년, ... , 2025+3(n-1)년임.

다.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 2서식)

* “연락처” 중 일반전화 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중 1가지 이상 반드시 작성, E-mail 주소는 선택사항이나 작성할 것을 권고함

라. 신고방법 및 절차

- (1)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이하 '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협회장에게 제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

【첨부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4호의2서식)

- 이전 신고 연도에 신고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직전 3개 연도 보수교육 관련 증빙자료(예시: 2022년도에 신고한 사람이 2025년도에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보수교육 관련 증빙자료)

※ 이전 신고 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신고 연도부터 신고하는 연도의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예시 : 2022년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2025년에 신고하는 경우, 마지막 신고 연도가 2019년이면 2019~2024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
- **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자격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

- (2)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반려’ 결정 통지

【신고요건】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 2025년부터 적용, 2025년 이전은 연간 4시간 이상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외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자기 근무이력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모두 해당
-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다만, 불가피한 경우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음
 -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 발송 비용은 협회가 부담

3.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가.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응급의료법 제55조제2항)
-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 (또는 처분일)부터 자격 효력 정지

나. 행정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자격의 효력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자격 회복 절차】



- 행정처분 후 효력 회복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요건 충족 필요(행정처분에 의하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하여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

4. 자격신고 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신고 수리 거부 절대 금지

- 자격 신고는 응급의료법 제36조의3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고 요건(보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 거부 불가

·Ⅱ 보수교육

1. 개 요

가. 추진 목적

-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응급의료기술 및 업무지침, 관련 법률 등을 적기에 습득하게 하여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토록 함.

나. 추진 경과

- '95. 1. 7.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실시근거 및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 처분 기준 마련
- '12. 5. 14. :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규정 마련
- '16. 5. 29. :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신고제 도입('17. 5. 30.시행)

다. 법적 근거

응급의료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 보수교육 업무 주관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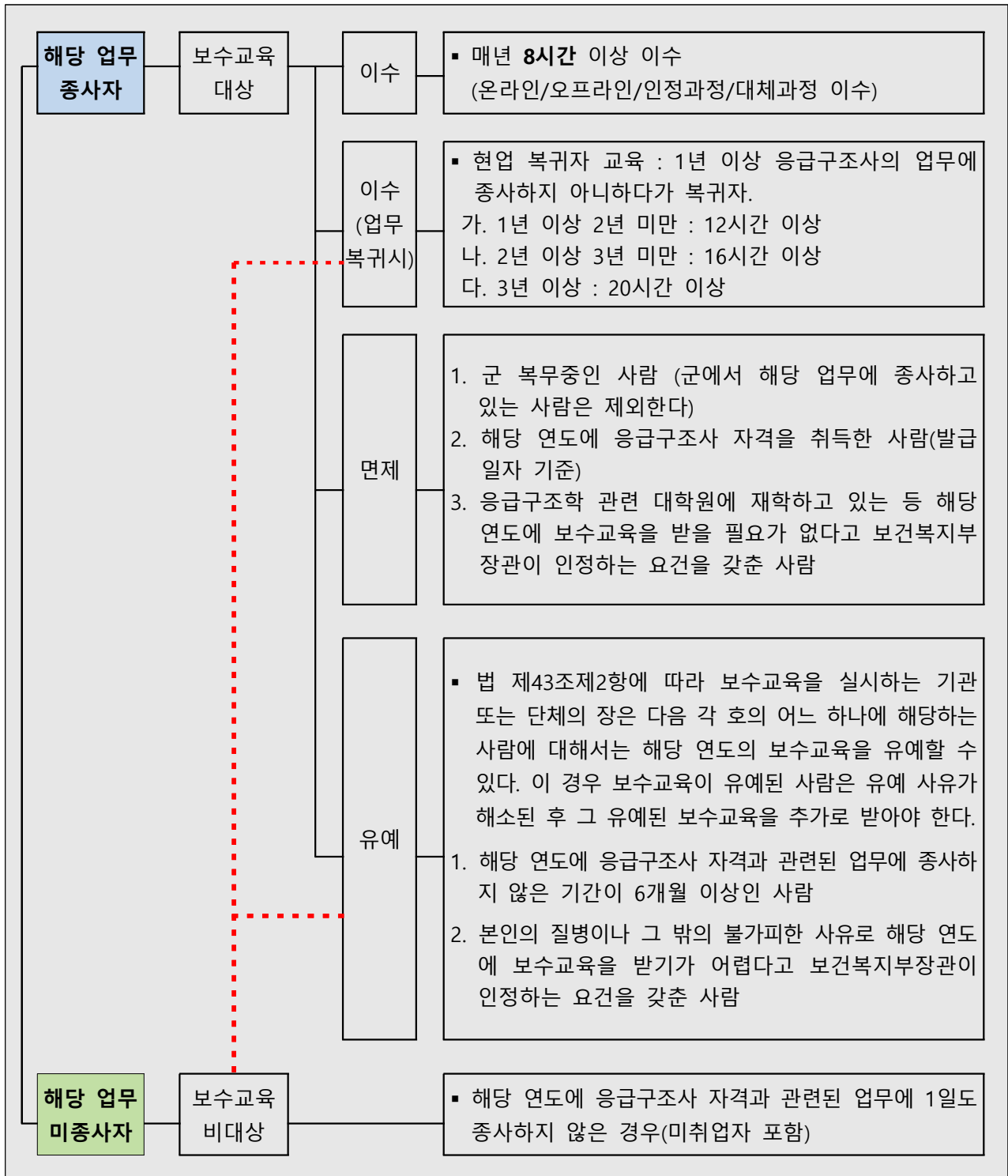
응급의료법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 해당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한 사람은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와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응급구조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
 - 다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일도 종사하지 않거나 미취업자인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 자격 취소된 자는 응급구조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 자격 효력 회복을 위한 신고를 위해서도 신고요건 충족 필요

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개정 2024. 10. 4., 시행일 2025. 1. 1.>

④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4., 시행일 2025. 1. 1.>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군 의무복무(현역병, 전환복무자, 보충역 등) 중인 사람을 일컬음

- 군 복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연도에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 6개월 미만이면 보수교육 이수

(예) 군 의무복무(현역병, 전환복무자, 보충역 등 포함)로 '20.11월 입대 후 '22.8월에 제대한 경우, '20년 보수교육 이수, '21년 보수교육 면제

(사례)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을 활용하여 의무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근무 시 교육 이수 대상 여부

→ 의무병 등 사병의 특성상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보수교육 면제대상으로 보나, 직업 군인(해당면허 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수교육 대상임

○ 해당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

○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025년부터 적용)

-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주·야간 구분 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 응급구조학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의미함

- 논문지도학기 과정 중인 자는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이 되는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 면제 대상자가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에 재학한 기간이 1학기 또는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임

- 해당 연도에 본인이 자녀를 출산한 자

※ 일자에 상관없이 '25년에 자녀를 출산한 자는 '25년 보수교육 면제, 다만 출산한 해의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 다음 연도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가능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채용 시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업의 조건(취업 시 자격이 필수 조건이거나 자격 소지자 가산점 부여 또는 우대, 취업 후 자격 수당 지급 등)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이나,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수교육 유예로 처리

(사례) 응급구조학 관련 교수 또는 강사(실습을 포함한 교육 등)로 활동하는 경우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 또는 강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이나, 교수 또는 강사로만 활동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에는 보수교육 유예 처리(2025년부터 적용)

- 본인의 질병으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자

- 본인의 질병으로 병가 또는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로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자

- 육아휴직과 해외 체류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신청 사례별로 검토 예정)

※ 해당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신청 사례별로 엄격하게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할 계획임

(4)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절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 2024. 10. 4.>

-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유예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첨부서류】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분	대 상 자	증빙서류
면제	1.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현역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군 복무 사실 및 기간 확인 가능 서류
	2. 당해연도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발급일자기준)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연도에 본인이 출산을 한 자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유예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OOOO년도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함’을 명기하여야 함) ※ 단기간 근무 후 퇴사로 인한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본인 자필 기록하고 서명 후 제출
	2. 본인의 질병으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자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직무분야, 휴직 기간 명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입원 치료기간 명시)
	3.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로서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직무분야, 휴직 기간 및 사유 명시)
	4.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인 자	출입국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자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례별로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응급구조사는 매년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4의 2호 서식)”를 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5일 안에 처리하여 교부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일도 종사하지 않은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 미취업자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참고로 응급구조 관련 행정직과 구급차량 운전직 등은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수교육 대상임)

(6) 보수교육 비대상 인정절차

-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5일 안에 처리하여야 함

【비대상자 증빙서류 예시】

-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업무에 미취업 중인 것이 확인 가능한 서류

- 타 직종 재직자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0000년도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함’ 을 명기하여야 함)

※ 단기간 근무 후 퇴사로 인한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본인 자필 기록하고 서명 후 제출

※ 보수교육 비대상자 여부는 『자격신고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비대상자 신청은 다음해 1월부터 가능 (2024년도 비대상자인 경우, 2025년 1월부터 2024년도 비대상 신청을 할 수 있음)

< 연도별 면제·유예 기준 >

구분	신청 대상 연도	
	2017~ 2024년	2025년부터~
면제 대상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 4. 해당 연도에 본인이 자녀를 출산한 자
유예 대상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으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3. 육아 휴직 중인 자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4. 해외에 체류 중인 자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비대상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미취업자를 포함함) ⇒ 당해연도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일도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비대상자임.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
- 당해 연도에 전년도 미이수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 (예) '23년에 이수, '24년 미이수, '25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2시간 이상
(= '24년 미이수 보수교육 4시간 + '24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초과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미취업자 및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미종사 기간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025년 1월 1일부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확대 되었으므로, 제3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적용 시점은 가목은 2026년, 나목은 2027년, 다목은 2028년이며, 각 목의 적용 시점 이전의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은 다음의 적용례와 같음

【현업복귀자 교육의 교육시간 적용례】

-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

: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시간 +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시간의 절반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25년) 2024년에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5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0시간 이상**(2025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2시간(2024년 보수교육 4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6년 이후)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25년) 2023년과 2024년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5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2025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4시간(지난 2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8시간(2023년 4시간+2024년 4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6년) 2024년과 2025년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6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4시간 이상**(2026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6시간(지난 2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12시간(2024년 4시간+2025년 8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7년 이후)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025년) 3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5년도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4시간 이상**(2025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6시간(지난 3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12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6년) 3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6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6시간 이상**(2026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8시간(지난 3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16시간(2023년 4시간+2024년 4시간+2025년 8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7년) 3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2027년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18시간 이상**(2027년 당해연도 보수교육 8시간 + 현업복귀자 교육 10시간(지난 3년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20시간(2024년 4시간+2025년 8시간+2026년 8시간)의 절반, 협회 온라인과정))
- (2028년 이후) **20시간 이상**

(3) 보수교육 유예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교육 이수 시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④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2. 1., 2024. 10. 4.>

1.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보수교육 유예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보수교육 시간】

▶ 보수교육 유예사유가 해소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시간 + 보수교육이 유예된 기간 (3년 이상 유예대상이었던 경우는 최근 3년) 동안에 이수하여야 했던 보수교육 시간의 절반

(예시 1) 2024년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5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0시간 이상**
(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4시간)의 절반 2시간)

(예시 2) 2023년, 2024년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5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8시간)의 절반 4시간)

(예시 3) 3년 이상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5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4시간 이상**
(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최근 3년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12시간)의 절반 6시간)

(예시 4) 2025년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6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2026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8시간)의 절반 4시간)

(예시 5)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2026년 유예사유가 해소된 경우 보수교육 시간: **14시간 이상**
(2026년 보수교육 8시간 + 유예된 보수교육 시간(12시간)의 절반 6시간)

(4) 보수교육 미 이수자 보충교육

○ 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 또는 유예 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 이수기간에 따른 보충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보수교육 시간】

▶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시간 + 미 이수한 보수교육 시간 전체

(예시 1) 2024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의 2025년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미 이수한 2024년 보수교육 시간 4시간)

(예시 2) 2023년, 2024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의 2025년 보수교육 시간: **16시간 이상**(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미 이수한 2023년과 2024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예시 3) 2025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의 2026년 보수교육 시간: **16시간 이상**(2026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 미 이수한 2025년 보수교육 시간 8시간)

(예시 4) 2024년, 2025년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의 2026년 보수교육 시간: **20시간 이상**(2026년 보수교육 8시간 + 미 이수한 2024년(4시간)과 2025년(8시간) 보수교육 시간 12시간)

(5) 보수교육 이수 시간 인정 및 평점제 운영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4.>

1. 소방청
2.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수교육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두 가지 경우는 보수교육으로 최대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으로 정한 교육

-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소속 지회, 관련 직역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관련 분야별 교육기관 및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 중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보수교육에 상응한다고 인정받은 교육

※ 회원·비회원간의 차등을 두지 않고,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함으로써 보수교육을 듣고자 하는 응급구조사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수교육 이수 시간 1시간을 1평점으로 하여 평점제를 운영할 수 있음
- 타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평점을 부여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평점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점이 이월되지 않는 만큼, 교육과목 선택에 따라 평점의 총합이 8 평점이 될 수 있도록 과정 편성 필요
- 평점제와 관련된 세부 운영기준을 사무편람에 명시하여야 함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마. 보수교육 내용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 (1) 직업윤리
-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 (4)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5)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편성 운영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3 보수교육 비용 산정 및 회계처리

가. 보수교육 비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

✓ 보수교육 직접비 산출

- 교육별로 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 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보수교육 간접비 산출

- 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 수(회원+비회원)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미납(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간접비는 보수교육 관련 인건비.운영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 및 그로 인한 운영비 등이 포함된 협회비 보다 많게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1시간당 간접비 * 교육 시간 ≤ 협회비)

-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는 교육준비 및 시행기간 중 투입된 상근 인력의 참여도에 따라 산정하되, 아래의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

구분	참여율
전담 인력	월 급여 * 100% 이내
보조 인력	월 급여 * 30% 이내
기획, 회계 담당 등	월 급여 * 20% 이내

- 보수교육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보수교육비 환불조건 및 환불기준 관련 규정 마련
- 보수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간접비는 100% 환불



보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게시사항 안내

홈페이지에서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 하도록 게시

- 보수교육비 편성 내역 및 산출근거
- 보수교육비 환불 조건 및 기준 명시
- 연중 보수교육 계획 및 상세 일정 등

나. 회계처리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협회 회비 및 일반운영비 등과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엄격히 관리
 -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익년도 보수교육 수입으로 계상하여 비용 산출하거나 보수교육 관련 사항으로만 지출
 - 보수교육 관련 예산(수입, 지출)은 별도의 계좌*로 사용
- *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
- 협회는 매년 3월 이전 보수교육 관련 수입, 지출에 대한 상세한 예산(당해연도) 및 결산(전년도)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다. 기타 수수료 관련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책정 및 부과 금지

4 행정 처분

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
 - 1차 위반 : 시정명령
 - 2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 3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나. 자격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되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 정지

5 보수교육 업무 관련 행정사항

가.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1) 보수교육 계획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기관,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교육 예산 등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

(2) 보수교육 실적 보고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
-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면허(자격)신고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여 관리

나. 보수교육 이수증 등 각종 서식 발급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및 비대상 확인서 발급
 - 응급구조사는 자격신고 시, 「면허(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및 비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설계 (※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다. 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

-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관계서류】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 명시)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사무편람 작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보수교육 관련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기타 협조 요청

-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협회는 지회 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
-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

주요 부당 운영 사례

-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
- 중앙회 지부 필수과목 지정,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상한시간 지정
-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
-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
-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규정(정관 시행 세칙, 보수교육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등)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의료법령 등(업무지침 포함)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 보수교육 관련 민원 발생 방지대책 수립 운영

- 회원 비회원 간 과도한 교육비 차별,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출결 관리 및 보수교육의 질 관리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보수교육 업무 관리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회는 제3기관에 보수교육 업무 위탁할 예정

○ 문의사항 안내 관련

-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내 직통 콜센터(1588-1339) 운영
- 자격신고제 관련 안내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안내

* 각종 홍보물에 협회 콜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
[주요 기관 및 문의처]

민원 유형	담당기관	문의처	
자격신고 접수	대한 응급구조사 협회	전화	1588-1339 내선 1번
		홈페이지	www.emt.or.kr
		이메일	emt@emt.or.kr
		주소	(우 2816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9 (응급의료종사자 전문교육원) 101호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신규 자격증 발급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전화	1544-4244 (콜센터)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주소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자격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전화	129 (보건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www.mohw.go.kr (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주소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044-202-2144)

·Ⅲ 참고서식

1.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3.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확인, 유예) 신청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4. 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 유예) 확인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5.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대상 확인 신청서
6.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대상 확인서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기 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등급			자격번호	
	자격증 발급 연월일				

실 태 · 취 업 상 황	취업 여부		
	[] 취업 ([] 정규, [] 비정규) [] 미취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법무부 [] 국방부 [] 산림청 [] 소방관련 기관 [] 해양경비 관련 기관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보건지소 [] 그 밖의 기관
		근무 기관 명칭/주소	
		의료기관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 [] 그 밖의 병원		
	근무 기관 명칭/주소		
	응급환자 이송업체	근무 기관 명칭/주소	
비영리법인	근무 기관 명칭/주소		
그 밖의 기관·단체	근무 기관 명칭/주소		
미취업	미취업 사유		
	[] 일시적 폐업·실직 [] 출산·육아 [] 질병·사고 등		
	[] 해외 체류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없는 업무 종사		
[] 그 밖의 사유()			
향후 3년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복귀 의사 없음 []			

보 수 교 육 및 신 고 관 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대상 여부 [] 이수 [] 면제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시간		이수의무 중 ()시간	이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 나.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최초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근무 기관 명칭"란 및 "근무 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4. 자격증과 관련이 없는 곳에 취업한 경우에는 "미취업"란에 표시합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 면제확인 [] 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제 호	
	소속기관		
	기관소재지		
신청사유	면제·유예 신청 대상 연도		
	면제사유 [] 군 복무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신청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상세 사유:)		
	유예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신청인	처리기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처리기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처리기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대상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제 호	
	소속기관		
	기관소재지		
신청사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대상 연도		
	비대상 사유 [] 미취업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 중 (상세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의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보수교육 비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처 리 기 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처 리 기 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대상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제 호	비대상 연도	
		비대상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